

학생상담센터 운영 규정

제 정 : 2025. 7. 1.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생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센터는 학생 개개인이 대학생활에서 겪게 되는 학업, 진로, 인간관계, 가치관 정립, 적응력 육성 등 심리적인 문제들을 도와 학생생활이 긍정적이고, 성장지향적이 되도록 하며, 자기 계발과 전인적인 성장·발달을 돕기 위한 제반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사업) 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리상담(개인상담, 집단상담, 온라인상담 등) 및 심리검사
2. 진로 및 학습상담
3. 심리상담 관련 특강 및 프로그램
4. 취약군 상담지원(고위험군 감지 등)
5. 소수집단(외국인 유학생, 장애학생, 다문화학생 등) 및 편입생, 복학생 등 상담
6. 효율적인 학생지도와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요 및 만족도 조사 연구
7. 대학생활 적응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대내외 사업
8. 학교부적응학생(학사경고자, 징계학생 등) 상담 및 교육 지원
9. 그 밖에 대학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한 대내외 사업 등

제2장 조직 및 위원회

제4조(조직 및 구성) 센터의 조직과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장의 임명은 학교법인 금강대학교 정관 제75조를 따른다.
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3.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교수, 전임상담원, 객원상담원, 시간제 상담원, 조교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상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이 위원장이 된다.
-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 상담원 또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예산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기타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소집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심의 안건 발생 시
2. 재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센터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발생 시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때에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자문위원) ①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센터장은 본 대학교 또는 다른 기관의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자문위원을 위촉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비밀보장 및 협조

제9조(비밀보장 및 권리) ①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은 상담 참여 여부를 선택하고, 상담계획에 참여하며, 자신의 사례 기록에 대한 정보를 알고, 특정 서비스를 거절할 수 있다.

② 센터 구성원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 내용 및 모든 기록에 관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준수한다.

③ 센터를 이용하는 학생의 사적인 정보와 상담 내용에 대해서는 비밀 유지를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학생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학생의 동의 없이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전문인이나 관련 기관에 알릴 수 있다.

제10조(부서 협조 및 환류체계) ① 학생의 심리지원 및 학교생활적응을 위해 대학 내 타 부서와 협조 및 연계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 핵심역량진단평가, 신입생 및 재학생 수요조사, 학생상담센터 수요조사, 심리 및 진로 프로그램 이용자 만족도 결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당해 연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환류체계를 통해 프로그램을 개선한다.

제4장 위기대응

제11조(설치) 우리 대학 재학생의 위기상황발생시 심리지원을 위해 위기대응팀을 둔다.

제12조(구성) 위기대응팀은 학생상담센터의 센터장 및 교학지원처장으로 구성하고, 위기학생에 대한 즉각적 개입이 필요할 시 해당 학생 소속의 학부(과)장 및 지도교수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13조(소집) ① 위기대응팀 회의는 학생상담센터에 상담사례가 접수된 때 또는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회의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4조(위기상황) ①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가 발생한 경우

② 자살 및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 또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학생상담센터의 전문적인 개입(치료, 상담, 부모 및 가족에게 연락 및 고지)등의 제안을 거절한 경우

③ 치명적인 자살시도 및 자살사건이 발생한 경우

④ 사회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여 학내구성원의 심리지원이 필요한 경우

⑤ 기타 위기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15조(기능) ①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 대한 상황 조치 및 심리지원

② 자살 및 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심리지원

③ 기타 위기 상황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심리지원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제정 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